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0
----------	-----

2023. 6. 1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4. 7. 박다미 의원 대표발의(13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4. 24.)
“ 심사보류 ”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3.)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박다미 의원)

강남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마련(안 제3조)

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심각한 해양오염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 위협 등 전지구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 1회용품의 생산과 소비는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위와 같은 집행부 차원의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에 그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하나,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는 자원재활용 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본 조례안은 생활패턴의 변화 등으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과 동시에 1회용품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공공기관이 대응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은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책무(제3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제4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제5조), 실태조사(제6조), 지원사업(제7조), 환경우수업소(제8조), 표창(제9조) 등 총 10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2 조례안 주요 조문별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한 것으로 1회용품과 다회용품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공공기관을 강남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추진계획 등(안 제3조, 제4조 및 제6조)

- 안 제3조, 제4조 및 제6조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를 명시하고 있음.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이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실태조사를 명시한 안 제6조는 안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안 제5조 및 제9조)

안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제공할 수 있다.

안 제9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안 제5조 및 제9조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 용품 구매·사용의 제한을 규정하고,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을 위해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라. 지원 사업 등(안 제7조 및 제8조)

안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
3.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8조(환경우수업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의 특징상 적극적·자발적인 주민참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 경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갖지 못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과 경험, 정보 부족 등으로 1회용품 줄이기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정책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하겠음.
- 이에 조례안은 1회용품 줄이기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과 관련 행사 및 홍보 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관 협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안 제7조)
- 또한 1회용품 줄이기 사업에 참여한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지정하여 인증마크 등을 수여하는 등 저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명시하고 있음.(안 제8조)

3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전반적인 내용이나 그 체계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와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바, 상호 조례 간 중복 규정 문제를 해소하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4. 24.)

- 질 의 : 국무총리 훈령인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과 관련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 내용은 전부 공공기관에 대한 것인데 조례명을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

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로 “공공기관” 한정이 없음. 조례명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것은 아닌가. “공공기관”을 넣지 않은 것에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다.

○ 답 변 : 권고사항의 법령이다 보니, 민간기관에 의무를 규정할 근거가 없고 서울시 내 다른 자치구 조례명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을 조례명에 넣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라 조례명에 “공공기관” 한정을 넣지 않음.

○ 질 의 : 조례 시행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가 공공기관 한정이 아니라 구민의 자발적 참여 제고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조례안의 내용에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 답 변 : 민간에 의무를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실태조사 등 조치 대상에 민간을 명확히 포함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질의자의 지적과 같이, 민관 구별 없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조례의 최종 목적이 맞으므로 민간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의 조문을 수정하겠음.

○ 질의과정 중,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보류됨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3.)

○ 질 의 : 지난 회의 때 지적되었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서 민간의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하는 데 동의하는가

○ 답 변 : 민간의 참여 제고를 위해 자발적 협약 체결, 실태조사 대상에 민간 포함 등으로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함. 조례 제정으로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환경 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함.

7. 토론 요지

- 토론과정 중, “자발적 협약의 체결” 등 일부 조문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삭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150호

발의일자 : 2023. 6. 13.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내용을 포함한 조를 신설하고, 일부 항 및 호를 신설·조정하고 삭제, 용어를 정비하고자 수정함

2. 수정내용

- 조항 신설(수정안 제6조)
- 일부 항, 호, 목을 신설(수정안 제2조제3호다목, 제4조제2항제4호,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제3호)
- 조례안 제4조제2항제5호 삭제
- 조례안 제1조, 제2조제3호가목,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제2호·제3호·제4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을 일부 수정하고 조, 항, 호의 연번을 수정함
- 수정안의 조, 항, 호의 연번을 정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정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촉진”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으로 한다.

안 제2조제3호가목 “따른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따른”으로 한다.

안 제2조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안 제2조제3호라목을 안 제2조제3호다목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 한다.

안 제3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을 ”1회용품“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제2호 ”실태조사“를 ”자발적 협약“으로 한다.

안 제4호제2항제3호 ”지원사업“을 ”실태조사“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2항제4호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안 제5조제3항 "필요하다고"를 "불가피하다고"로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안 제6조를 안 제7조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공공기관의 1회용품"을 안 제7조제1항 "1회용품"으로 한다.

안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게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안 제7조를 안 제8조로 한다.

안 제8조를 안 제9조로 한다. 안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안 제9조를 안 제10조로 한다.

안 제10조를 안 제11조로 한다.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u>정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u>따른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생략)</p> <p><u><신설></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생략)</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u></p>	<p>제1조(목적) ----- ----- ----- ----- <u>규정함으로써</u> ----- <u>환경 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u>----- ----- --.</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 <u>따른</u> ----- ----- -----</p> <p style="padding-left: 20px;">나.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u>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u></p> <p style="padding-left: 20px;">라. (현행 다목과 같음)</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 <u>1</u> ----- <u>회용품</u> -----</p>

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4. 제8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생략)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자발적 협약-----

3. ----- 실태조사-----

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제9조-----

<삭제>

6. (현행과 같음)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불가피하다고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 (생 략)

제8조(환경우수업소) ① 구청장은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
수업소(이하 “우수업소” 라 한다)

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
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
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 1회용품 -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
관에게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
다.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9조(환경우수업소) ① -----

로 선정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제9조·제10조 (생략)

-.

1.·2. (현행과 같음)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제11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게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
3.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환경우수업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박다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
----------	-----

발의연월일: 2023. 4. 7.

발 의 자: 박다미·강을석·복진경·
이동호·김진경·이향숙·
노애자·손민기·오은누리·
김현정·우종혁·한윤수·
안지연 의원(이상13인)

1. 제안이유

강남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마련(안 제3조)
- 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자

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
3.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환경우수업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2.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공원·고궁 등 소관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제품을 구매·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1회용품
2. 페트병(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3. 풍선
4. 우산 비닐

- ② 공공기관이 장례식장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해당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제공·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상례(喪禮)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1회용품은 제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해당 청사 내의 매점·식당·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1회용품의 제공을 자제하고 판매를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⑤ 공공기관은 우편물을 발송할 때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⑥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 외부로부터 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의 권고 등) ① 공공기관이 각종 행사에 그 명칭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실천 운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